

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건설하나로통장’(이하 ‘이 예금’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’,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, ‘우체국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’, ‘우체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.

1.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(서류 예시 :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)
2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소지자
3.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
4.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‘훈련수강확인증’ 소지자

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- ① 이 예금의 가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- ② 이 예금의 해지는 우체국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 등을 통하여 한다.

제5조 【가입기간】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.

제6조 【가입금액】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.

제7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 등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
-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 결산기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최고 연 0.8%p를 제공한다.
1. 전월에 「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」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: 연 0.4%p
 2. 전월에 「해외 자동송금 서비스」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: 연 0.2%p
 3. 전월에 「급여이체」, 「우체국 적금으로 자동이체」, 「결산기간 동안 평균잔액 50만원 이상」 실적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: 연 0.2%p
- ③ 이 예금의 우대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.

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이 예금은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결산기간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까지는 기본이율에 우대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하며,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「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이용실적」 우대는 전월(1일~말일)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의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.
※ 단, 체크카드 승인·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(신용결제 제외)
- ③ 「해외 자동송금 서비스 이용실적」 우대는 전월(1일~말일)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해외 자동송금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.
- ④ 「급여이체 실적」 우대는 전월(1일~말일)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에서 정한 급여성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.
※ 급여이체 기준은 『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』 제공기준을 따르며 해당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따름
 - 1) 우체국 급여성이체 약정 고객
 -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(±3영업일)에 있는 경우
 -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
 - 2) 우체국 급여성이체 미약정 고객
 -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
- ⑤ 「우체국 적금 자동이체 실적」 우대는 전월(1일~말일) 동안 이 예금에서 우체국 적립식 예금으로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.
- ⑥ 「결산기간 동안 평균잔액 50만원 이상 실적」 우대는 결산기간(전월 결산일 다음날~당월 결산일) 동안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.

제9조 【이자계산】

- ① 정기이자계산 기준일(결산일)은 매월 넷째 토요일로 한다.
- ② 이자 계산기간(결산기간)은 최초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또는 지급일 부터 차기 지급일 전일까지)로 하고 이자계산은 매일의 최종 잔액을 평균 하여 고시된 해당 이율로 셈한다.

제10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 예금의 이자는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(지급일)에 통장으로 입금된다.

제11조 【우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에서 전월 동안 ‘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’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 해당하는 경우, 매월(1일부터 말일까지)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.
 1. 전자금융(인터넷 · 폰 · 모바일뱅킹) 타행이체, 전화번호이체 수수료 면제
 2.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면제
 3. 우체국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※ 단,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금액만 실적으로 인정 (신용결제 제외)
- ② 이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epostbank.go.kr) 에 게시하는 등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따른다.

제12조 【과세구분】

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 가능하다.

제13조 【기타】

이 예금은 양도, 승계,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4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